# 서울특별시 영상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# 검 토 보 고

## 1. 회부경위

가. 의안번호 : 제622호

나. 발 의 자 : 장태용 의원 외 21명

다. 발의일자 : 2023년 03월 29일

라. 회부일자 : 2023년 04월 03일

## 2. 제안이유

○ (가칭)서울시네마테크 개관(’24.3월 예정) 이전에 영상산업 지원시설 설치·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, 원활하고 성공적인 시설 운영으로 서울특별시 영상문화 발전과 영상산업 진흥에 기여하고자 함.

○ 서울시네마테크 시설 운영 및 활성화 방안 등 논의를 위한 운영위원회 설치·운영에 관한 근거 조항을 마련하여 효율적인 시설 운영에 대한 토대를 마련하고자 함.

## 3. 주요내용

가. 서울시 영상문화의 발전과 영상산업 진흥을 위한 지원시설 설치·운영과 시설의 수행 기능을 적시한 조항 신설(안 제9조)

나. 지원시설의 관리·운영에 관한 심의기구로서 운영위원회 설치·운영과 위원회의 심의사항을 적시한 조항 신설(안 제10조)

## 4. 검토의견 (수석전문위원 강상원)

### 가. 개정안의 개요

○ 개정안은 2024년 3월 개관 예정인 영상산업 지원시설(서울시네마테크)과 지원시설의 효율적인 관리·운영을 위한 운영위원회의 설치·운영 근거를 조례에 반영하고자 발의됨.

### 나. 서울시네마테크 건립 배경 및 진행상황

○ 영화계는 2002년부터 영화진흥위원회의 지원을 받아 독립·예술영화를 상영하고 영화 관련 자료를 보존하는 시네마테크[1]인 '서울아트시네마'[2]를 운영하고 있음.

○ 그러나 정부와 서울시의 지속적인 지원 없이 시설을 임대 운영하면서 '서울아트시네마'의 이전이 반복[3]되자 정부와 서울시에 전용시설의 건립을 요청함.

- '영상산업 청책 토론회'(2013.3.22.)에서 ▸독립·예술영화 상영공간

1) 영화 관련 자료실 또는 실험 영화 극장(국립국어원 표준대사전)
2) 운영주체 : (사)한국시네마테크협의회
3) 아트선재센터(2002~2005.4.)→낙원상가 허리우드극장(2005.4.~2015.3.)→서울극장(2015.4.~2021.12.)→경향아트힐(2022.3.~현재)

부족 문제, ▸영상문화에 대한 시민 수요 충족, ▸공적 영상 전문 시설 확보 등을 위한 ‘시네마테크 건립’ 등이 제안됨.

○ 서울시네마테크는 서울영상산업의 기반구축과 비상업영화(독립·고전·예술)에 대한 시민 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해 전용관을 갖춘 영상 전문공간으로 조성하고 있음.

○ 부지조성과 건립 타당성조사 연구용역, 국제지명 설계공모 등의 절차를 거쳐 현재 건립공사가 진행 중이고, 내년 3월 개관 이후에는 민간 위탁을 통해 지원시설을 운영할 예정임.

○ 다만 2020년 2월 착공 이후 인접 건물 안전성 확보를 위한 보강공사와 매립 폐기물 처리, 공법 변경 등으로 인해 공기와 사업비가 증가하면서 3월말 현재 공정률이 50%에 불과해 내년 3월 정상 개관이 어려운 것으로 전망됨.

## <‘(가칭)서울시네마테크’ 건립 개요>

□ 개　　요
◦ 사업기간 : 2015.7. ~ 2024.3.(개관 예정)
◦ 위　　치 : 서울시 중구 마른내로 38
◦ 건축규모 : 연면적 4,806㎡(지하3 ~ 지상10층, 대지 804.1㎡)
◦ 총사업비 : 26,482백만원(국비 161, 시비 26,321) ※ ’23년 예산: 9,349백만원
◦ 공간구성 : 상영관(3개소), 미디어센터, 아카이브, 전시실 등

| 층 별 | 지1~2층 | 1층 | 2~3층 | 4층 | 5~6층 | 7층 | 8층 | 9층 | 10층 |
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
| 용 도 | 상영관Ⅰ(215석) 영사실 | 카페, 매표소 | 상영관Ⅱ(99석) 영사실 | 자료열람실 수장고 | 상영관Ⅲ(125석) 영사실 | 디지털교육실 대형강의실 | 기자재실 복합스튜디오 | 운영 사무실 | 옥상 극장 (루프탑) |
| 면적(㎡) | 358 | 351 | 318/326 | 346 | 315/312 | 390 | 402 | 380 | 244 |

□ 추진경과

◦ 2013. 3. : 영화산업 정책토론회 개최시 시네마테크 건립 제안·수용
◦ 2013.10.~12. : 건립 타당성조사 연구용역(숙명여대 산학협력단)
◦ 2015. 7. : 서울시네마테크 건립 기본계획 수립
◦ 2018. 9. : 서울시네마테크 건립준비위원회 구성
◦ 2019.12.~2020.1. : 서울시네마테크 운영 관련 학술용역 및 공청회(2회)
◦ 2020. 2.~2024.2. : 착공 및 공사 추진

## 다. 주요 개정사항

### ⑴ 영상산업 지원시설의 설치·운영 근거 마련(안 제9조 신설)

○ 개정안은 개관 예정인 영상산업 지원시설(이하 “지원시설”)의 설치와 운영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, 지원시설에서 수행하는 사업을 ▸영화 상영관 운영, ▸영화 관련 자료 수집 및 보관, ▸그 밖에 영상산업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 규정함.

| 현 행 | 개 정 안 |
|---|---|
| <신 설> | 제9조(영상산업 지원시설의 설치) ① 시장은 영상문화 및 영상산업의 진흥을 위해 영상산업 지원시설(이하 “지원시설”이라 한다)을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<br>② 지원시설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.<br>1. 영화 상영관 운영<br>2. 영화 관련 자료 수집 및 보관<br>3. 그 밖에 영상산업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|

○ 영상산업의 기본 토대이지만 상업성 부족으로 개봉관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독립·예술영화를 지속적으로 지원하고, 영상산업 관련 아카이브를 구축하여 영상산업의 저변확대와 안정적인 성장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음.

- 영상산업 지원시설의 명칭은 향후 공모 등을 통해 확정할 예정임.

⑵ 영상산업 지원시설 운영위원회(안 제10조 신설)

○ 개정안은 영상산업 지원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수탁기관에 ‘지원시설 운영위원회’(이하 ‘운영위원회’)를 구성·운영하도록 함.

| 현 행 | 개 정 안 |
|---|---|
| <신 설> | 제10조(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) ① 제12조에 따른 위탁을 받은 자는 지원시설의 효율적인 관리·운영을 위해 지원시설운영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구성·운영하여야 한다.<br>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, 당연직 위원은 시 영상산업진흥 업무 소관 부서의 장으로 한다.<br>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하고 자문한다.<br>1. 지원시설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<br>2. 지원시설 관리·운영 기본계획의 수립·시행에 관한 사항<br>3. 그 밖에 지원시설의 관리·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<br>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. 다만,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가 남은 기간으로 하며,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.<br>⑤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두되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.<br>⑥ 위원장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해제할 수 있다.<br>1. 본인이 원할 때<br>2. 질병, 장기 출타 또는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없을 때<br>⑦ 제1항에 따른 위원 구성은 「양성평등기본법」 제21조제2항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촉직 인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. 다만, 같은 항 단서에 따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<br>⑧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<br>⑨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「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」를 따른다. |

○ 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해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면서 당연직 위원은 서울시 영상산업진흥부서의 장으로 하고(제2항), 지원시설의 예산·결산, 관리·운영 기본계획의 수립·시행 등을 심의·자문하도록 함(제3항).

○ 영상문화와 영상산업의 발전을 위해 조성된 지원시설의 관리·운영 방안을 결정함에 있어, 민·관의 전문가와 이해관계자 등이 참여하여 행정의 민주성과 공정성,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는 장점이 있음.

○ 다만, 수탁기관은 서울시와 대등한 자격에서 위수탁계약을 체결한 별개의 법인이므로 조례를 통해 수탁기관에 운영위원회 설치와 서울시 공무원의 당연직 위원 위촉을 강제하는 것이 적법한 것인지에 대한 법리검토가 요구됨.

○ 이와 같은 논란을 피하고자 일부 수탁기관에서는 위수탁협약서에 수탁기관 운영위원회의 설치와 구성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나, 수탁기관별로 협약서의 해당 내용이 상이하므로 지침 등을 통해 통일성 있게 관리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.

| 담당 조사관 | 연락처 |
|---|---|
| 최범준 | 02-2180-8056 |